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49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 박해철·한민수·이수진

김정호 · 송옥주 · 김승원

김남희 · 서영석 · 안태준

임호선 • 박홍근 • 박균택

정성호 · 임광현 · 전재수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.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,845억 원이었고,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,432명이었음.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.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.

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.

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 자를 부과하고, 고의·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 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 자까지 확대함(안 제37조).
- 나.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(안 제43조의2).
- 다.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(안 제43조의4 신설).
- 라.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3조의5 신설).
- 마.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,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,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 3조의6 신설).

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제36조"를 "제36조, 제43조"로, "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"를 "제2항에 따른 날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「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만 해당된다)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, 제43조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는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.

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"수당"을 "수당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"으로, "3천만원"을 "2천만원"으로 한다.

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4(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) ①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.

1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임금등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 직급여등은 제외한다)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

- 2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,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
-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 체불횟수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3조의5(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제한 등)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 료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요 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  - 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·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
  - 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 전심사나 낙찰자 심사·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
  - ②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 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43조의6(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,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, 제43조의5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전산망의 이용(이하 "자료제공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
  - 2.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,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
  - 3.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
  - 4.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 한 자료, 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 득에 관한 자료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

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

- 5.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
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)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이자) ① -----제36조, 제4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3조에-----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 만 해당된다)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-----제2항에 따른 날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 의 범위에서 「은행법」에 따 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 <신 설> ② 제1항에 따른 제36조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 만 해당된다)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,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

## ② (생략)

제43조의2(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 저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, 제43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 항제2호, 제56조에 따른 임금, 보상금, 수당, 그 밖의 모든 금 품(이하 "임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(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. 이하 "체불사업주"라 한 다)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 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 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체불사업주의 사망・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는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
날로 한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43조의2(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
①
<u>수당,</u> 「근로자퇴직급
여 보장법」제12조제1항에 따
른 퇴직급여등
- <u>2천만원</u>

② ~ ④ (생 략) <신 설>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  제43조의4(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) ①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
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
 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
  자로 한다.
  - 1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임금등(「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)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
  - 2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, 체불총액이 2 천만원 이상인 사업주
  - ②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 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 다.
  -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, 같 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 체

<신 설>

불횟수의 산정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5(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제한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, 지방자기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있다.

- 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·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
- 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・결정 시 감점 등불이익 조치

<u><신 설></u>

- ②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 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43조의6(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 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,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, 제43조의5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(이하 "자료제공 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 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

- 2.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
 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
 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
  자료,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1
  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
  관한 자료, 「부가가치세법」
  제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
  및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
 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
- 3.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
- 4.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에 따른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, 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
- 5.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

 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
<u>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</u>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 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 료 등을 면제한다.